

技術移轉 및 開發促進戰略

(2)

과학기술처 진흥국장 金 澄 基

6. 技術導入節次的 簡素化 및 段階的인 自由化指向

技術乃至 技術去來가 갖는 特殊性에도不拘하고 지금껏 技術을 資本과 同一視하여 同一한 節次를 適用시켜 왔기 때문에 審議過程에 있어서 關係機關이 너무 많고 認可節次가 複雜하여 急激한 國際技術市場에 効率的으로 對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最近에 이르러 國內의 技術基盤도 相當히 蓄積되어가고 있고 外貨事情도 현저히 改善되었기 때문에 段階的인 自由化를 指向한다는 目標아래 技術導入節次的 簡素化와 認可條件의 緩和를 期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資本과 分離하여 技術導入을 위한 別途의 合目的인 審議制度를 確立하고 日本의 例처럼 技術導入 申請後 一定 期間內에 關係部處의 異見이 없을時 自動許可해주는 制度를 漸進的으로 推進하며, 아울러 導入必要的 것으로 事전에 選定된 技術이나 輕微한 技術, 其他 一定한 要件에 適合한 技術導入에 對해서는 認可制代身 申告制로 하거나 代價·期間等의 審議基準을 大幅緩和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參考로 日本이 技術導入自由化의 經過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49年 「外國換 및 外國貿易管理法」, 1950年 「外資에 關한 法律」이 各各 制定·實施되면서부터 技術導入에 대해 嚴重한 規制를 해 오다가 1961年에 國民經濟上 特別한 支障을 주지 않는 限 原則的으로 認許可해주는 方向으로 規制를 緩和하기 始作하였고 1964年에 日本이 OECD에 加盟함에 따라 日本銀行에의 委任範圍를 擴大하면서 規制措置를 더욱 緩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1968年에 이른바 「第1次自由

化」措置를 取하였는데 그 主要內容은 ① 技術代價 5萬弗以下는 自動認可制로 하고 ② 申請後 1個月內 主務部로부터 特別指示가 없는 限 自動認可해 주고 ③ 다만 航空機, 武器·原子力·컴퓨터·石油化學等 分野에 對하여는 個別審査에 依하도록 留保하였다. 다시 1972年에는 컴퓨터技術 分野中 소프트웨어 5萬\$以下, 하드웨어 10萬\$以下 石油化學分野도 自由化되 航空機, 武器, 化藥, 原子力分野에 對하여는 日本銀行에 委託處理토록 하였다. 이른바 「第2次 自由化」措置는 1974年에 取해졌는데 그 內容은 全面的인 自由化를 實施하되 技術代價 30萬\$以上, 武器, 航空機, 原子力分野 技術로서 10萬\$以上은 日本銀行에 處理토록 하는 것이다.

위와같은 日本技術導入自由化의 背景을 分析해 보면 ① 對內的 要因으로서 經濟復興에 따른 外貨事情의 改善과 自體技術水準의 向上 및 開發能力의 向上 ② 對外的 要因으로, OECD 國家로부터의 繼續的인 壓력과 資本自由化의 國際的 趨勢, 그리고 ③ 日本政府가 導入技術의 選擇과 契約條件等의 決定을 自國企業 스스로에게 맡길 수 있을 程度가 되었다고 判斷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 看過해서는 안될것은 1968年에 있는 第1次 自由化措置를 取하면서 日本의 閣議는 外資審議會의 答申 및 建議에 따라 自由化에 對應한 補正策으로서 ① 研究開發投資의 擴充 ② 政府·大學·民間研究機關內 研究開發活動의 組織化·計劃化·効率化 ③ 研究者·技術者·技能者의 質·量的 確保와 理工系 教育訓練의 強化等を 決定하고 그 以後 組織的인 支援施策을 講究함으로써 6年後의 第2次自由化를 充分히 可能토록 한 科學技術基盤을 造成했다는 事實이다. 우리나라도 未久에 先進工業國家에 肉

迫하고 貿易自由化의 波濤가 거세지면서 必然技術導入 自由化의 問題가 提起되어 질 것인바 미
리부터 이에 對한 基盤造成과 事前對備를 해나
가야 할 것이다.

7. 技術導入契約上의 不利한 制限措 置에 對한 漸進的 解決

技術導入契約중엔 흔히 技術移轉去來의 效果
를 制限하거나 技術導入者를 不利하게 하는 다
음과 같은 毒素的 條項들이 包含되는 경우가 있
다. 例컨데 ① 輸出地域·輸出價格 또는 輸出量
의 制限 ② 原資材 또는 副資材의 購買強要 ③
高價의 技術代價 또는 過度하게 長期의 로얄티
支拂期間 要求 ④ 製品의 品質保障忌避 ⑤ 提供
技術資料의 返還要求 ⑥ 內需用 製品에 對한 商
標使用強要 ⑦ 競爭技術의 取扱制限 等이다.

1960年代以來「新國際經濟秩序」의 確立을 目標
로 UNCTAD를 中心으로 하여 技術移轉에 관한
國際行動規範(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의 制定은 움직임이 具體化되고 있고, UN事務
局·OECD·國際商工會議所 等에서는 主로 多
國籍企業이 巨大한 企業規模와 技術優位를 利用
한 國際技術市場의 獨寡占化와 技術移轉에의 一
方的 行態를 取하는 것에 對해 規制하려는 움직임
이 있다. 또한 안데스條約(Cartagena Agree-
ment)에 依한 南美 5個國家(볼리비아·콜롬비
아·칠레·에쿠아도르·페루)와 멕시코等を 비
롯한 開發途上國家들도 技術導入上의 不利한 制
限條件에 對해 強力한 規制措置를 取하고 있어
이 問題는 이제 南北問題의 次元에서 國際的인
論議의 對象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自體의 技術開發能力이나 輸出等
을 制限하는 것에 對하여는 認可하지 않는다는
方針 아래 模範的 技術導入契約書의 作成配布에
依한 企業指導, 技術契約 專門家의 訓練 및 養成,
技術導入 相談機能의 強化에 依한 協商能力
의 提高 및 技術情報體制의 活用 그리고 政府에
依한 合理的 認可基準의 適用等を 通해서 漸進
的으로 이 問題를 解消해 나가되, 덜지않아 處
하게될 우리나라의 技術提供者의 立場을 充分히
考慮하여 可及的 融通性있게 對處해 나가도록해

야 할 것이다.

8. 技術導入의 限界와 自主的 技術開發體制의 確立

産業技術開發의 效率의 開發過程에 있어서 技
術移轉 特히 技術導入이 앞에서 본 바와같이 重
要한 比重을 占함에도 不拘하고 그것에는 亦是
限界가 있다. ① 先進國에서는 技術을 政治外交
의 道具化로 삼는 傾向이 있고 ② 技術의 販賣
者市場(Seller's Market)化에 따라 高價의 技術
代價와 지나치게 까다로운 條件을 要求하며 ③
國際競爭이 熾熱해짐에 따라 資源내소날리증
傾向과 더불어 技術내소날리증化 現象이 나타나며
④ 核心的 노우하우나 基本設計等은 提供을 忌
避하고, ⑤ 技術支配에 依한 市場支配가 可能
토록 하는 技術隔差(Technological Gap)를 維持
하기 위해 各種의 保護措置를 講究한다. 美國의
경우 技術의 對外優位를 繼續維持하기 위하여 必
要하다고 認定되는 경우 美國의 特許技術이 第
三國에 供與되는 것을 禁止할 수 있는 權限을 法
律(The Burke Hartke Bill)로써 大統領에게 賦
與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例이다.

특히 우리 韓國이 急速한 經濟成長을 이룩하게
됨에 따라 潛在的 競爭對象國이 될 先進諸國으
로부터의 警戒가 높아지고 上記한 技術導入上
의 制約이 보다 클 것으로 豫想될수도 있기 때
문에 우리는 技術導入이 갖는 利點을 十分 活用
하면서 自主的 技術開發體制의 確立에 應分의 準
備를 해 나가야 않으면 안될 것이다.

5. 結 語

技術은 더욱더 高度化되어 가고 綜合化·시스
템化·省力化·自動化·소프트웨어化 되어가고
있다. 이와같은 趨勢를 받아 들이면서 우리도 우
리의 環境과 與件에 最適當하고 比較優位가 가
장 큰 頭腦集約的 戰略産業을 보다 科學的으로
抽出·設定해서 그것을 中心으로 投資의 集中과
優秀人력을 投入·結合시켜 나가되 前述한 바와
같이 段階的으로 先進技術導入과 自主的 研究開
發活動을 調和있게 併行·活用해 나가는 政策的
叡智를 最大로 發揮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